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116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청구]

재판경과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116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2. 1. 10 선고 2001나817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소송대리인 변호사 정BA)

【피고, 상고인】 CA조합

【피고보조참가인】 정리회사 DA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D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D 담당변호사 문BB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02. 1. 10. 선고 2001나81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아파트에 대한 각 부분의 하자 중 판시와 같은 하자가 시공회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의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가 그 하자보수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내의 것이며 그 보수를 위하여 합계 383,901,921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위 하자보수공사에 같음하여 그 공사대금 범위 내인 이 사건 보증계약 상의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채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이 ○○아파트의 각 부분의 하자 중 그 주장과 같은 하자들이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시한 부분은 마치 피고가 그 하자들이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지 아니하여 다소 부적절하나 이는 그 하자들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부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 하자들에 대하여도 피고의 하자보수보증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